2020. 12. 21.

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

1. 논의 필요성

▣ **현재 전례 없는 판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국 법원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**

▣ **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, 판사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 일을 몰아서 무리하게 야근을 하고 재택근무 시에는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, 아예 재택근무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음.**

- 2020. 7. 28. 코트넷 공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, 집중 육아기에 있는 법관들 중 신청자에게 업무용 가상피씨가 제공되는 제도가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.
-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용 가상피씨 접속이 제한되어, 재택근무 시 활용성이 떨어지고, 현재의 판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의 필요성은 집중 육아기에 있는 법관들에게뿐 아니라 전체 법관에게로 확대되었음
- 법원 외부에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업무용 가상피씨 지급의 경우 현재 보유 회선이 제한되어 있고,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알고 있음.
- 그러나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2020. 9. 29. 개정된 「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」가 정한 재택근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적 방역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파행적 운영이라는,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- 적어도 재택근무일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업무용 가상피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업무용 가상피씨 제공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임

▣ **특히 형사재판의 경우,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임**

- 형사전자소송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법원 내외부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
- 형사전자소송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것이나,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기 전인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, 일부 법원 및 재판부에서만 형사사건 전자사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사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부와 사이에 재택근무 여건에 현격한 차이

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

2. 안건의 구체적 내용

▣ **업무용 가상피씨 수 확보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, 형사전자소송 조기 도입,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등을 아우르는 재택근무 실질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**

▣ **이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인 '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' 등과 맞물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재판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음**

▣ **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용 가상피씨의 수 확보 및 원하는 모든 법관에게 확대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**

- 업무용 가상피씨 제공 확대는 추가적인 연구·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됨.
- 그 외 재택근무 실질화 방안은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안건으로 보임